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12. 13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11월 9일

나. 발 의 자: 이성수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11. 2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성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 및 시설 확충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경진)

○ 본 조례안은

-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 및 시설 확충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제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이고 5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,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책무를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에서는 맨발 보행로의 조성·확충, 시설의 설치·보수, 홍보 및 교육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, 해당 사업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○ 검토결과

- 특별한 운동 기구가 필요 없고 비용이 들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신체활동으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복지 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성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11. .

발 의 자: 이성수, 신흥식, 유승용
임헌호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 및 시설 확충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3. 11. 9.~ 11. 13.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일상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맨발 걷기”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.
2. “맨발 보행로”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.

가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
나. 도시공원 외 탐방로, 산책로,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

다.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·시행)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

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 사업)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

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맨발 보행로의 조성·확충 및 정비
2.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·보수
3.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
4.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